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편입된 사람”을 “편입된 사람(‘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여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여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를 각각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만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공상자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집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병무청 정보화 자료 확인
2.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보충역에 편입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별지 제2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병무청 정보화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1회(2월, 8월) 계속 치료 여부 확인
3.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공상자 : 군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전·공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계속 치료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소집순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 재개 등을 이유로 제1항제5호바목을 다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의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형의 선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3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력사항과 소년 보호처분 사항”을 “경력사항”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해당 연도 교육 종료일부터 다음 해 교육 시작일까지 교육계획이 없어”를 “복무기본교육 일정이 없어 복무시작일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항에 해당하여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해야 하는”을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경우

6.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퇴교된 경우

제3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횟수와 소집일자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 시 군사교육소집 중 귀가 또는 퇴영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보수 지급에 필요한 귀가·퇴영 일자 등의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9.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 중 영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기간(휴학 등 학적이 유지되는 기간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재학생입영연기 기간을 포함한다)

제51조제3호 중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9. 제52조제2항에 따른 학력 확인 관련 자료 또는 그 밖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나목・바목,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질병 사유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적사항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이용 관련사항 (통보받은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목적	「병역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 결정을 위한 치료 이력 확인
	개인정보 이용항목	◦ **진료개시일, 입·내원구분, 입·내원 일수, 요양(검진) 기관명, 질병코드, 상병명(특수상병 포함), 요양기관 연락처**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의료급여 포함) 상 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을 동의한 날로부터 5년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병력(病歷),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안내 및 유의사항

1. 본 동의서는 「병역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 지방병무청장은 본 동의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 1회 요양급여내역을 제공받아 정기적으로 치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확인 결과 계속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속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소집순서가 변경된 이후에는, 치료 사유로 소집순서가 재조정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① 영 제52조제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병역준비역 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20세 이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0. ---------- 편입된 사람('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여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11. ~ 25. (생 략)	11. ~ 2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제17조(소집순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여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
가.·나. 삭 제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의2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 ----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	마. ----------. ----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

(집행유예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바.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신 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만,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3)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4)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공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③ 제1항제1호----------

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 ---------- ---------- ---------- ---------- ----------.
④ 삭 제	
<신 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집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병무청 정보화 자료 확인 2.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보충역에 편입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별지 제2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병무청 정보화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1회(2월, 8월) 계속 치료 여부 확인 3.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공상자 : 군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전·공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신 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계속 치료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소집순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 재개 등을 이유로 제1항제5호바목을 다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① ~ ⑤ (생 략)	제23조(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의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 ---------- ---------- ----------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을 제한한다.	----------.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1. ----------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 중 또는 형의 선고-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3인 이상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는 지정할 수 있다.	5. ---------- ---------- ----------. --- 2인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성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별표 12)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 ---------- 범죄경력 ---- ---------- ---------- ---------- ---------- ---------- ---------- ---------- ---------- ----------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복무기관 지정을	④ ---------- ----------

제한하기 위하여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1회(5월, 11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범죄 경력사항과 소년 보호처분 사항을 조회하고 회신 결과를 전산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 ---------- ---------- ---------- ---------- 경력사항---- ---------- ----------.
제27조(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① ~ ⑦ (생 략)	제27조(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는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자로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복무기본교육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가장 가까운 복무기본	⑧ ---------- ---------- ---------- ---------- ---------- ---------- ---------- ---------- ---------- --------. <단서 삭제>

교육 시작일에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⑨ ----------.
1.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해당 연도 교육 종료일부터 다음 해 교육 시작일까지 교육계획이 없어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 복무기본교육 일정이 없어 복무시작일에 ----------
2. 복무기본교육 공백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8항에 해당하여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해야 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경우	4.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된 ----------
<신 설>	5.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6.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퇴교된 경우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집일자 연기) ① (생 략)	제35조(소집일자 연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삭 제>
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와 소집일자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 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다.	⑦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인도·인접) ① ~ ④ (생 략)	제40조(인도·인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신 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 시 군사교육소집 중 귀가 또는 퇴영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보수 지급에 필요한 귀가·퇴영 일자 등의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대기기간의 공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기기간에서 공제하되, 각 사유별 대기기간은 합산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장기대기기간의 공제)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8조제5호(24세 이하 교환 및 방문학생) 및 제18조제6호(24세 이하 원격수업 전환자)에 따라 국외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8.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9.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9.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 중 영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기간(휴학 등 학적이 유지되는 기간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을 포함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51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51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외자)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중인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	3. ----------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신 설>	9. 제52조제2항에 따른 학력 확인 관련 자료 또는 그 밖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